-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專門委員 檢討報告

▢ 발 의 자 : 오장세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5년 10월 12일

○ 회부일자 : 2005년 10월 14일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각종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 이와같이 기금은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부처가 정책수행을 위해 개별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토록하고 있어 주민대표인 지방의회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 기금 규모는 계속하여 확대·팽창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기금의 안전성 확보와 수익성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미래 우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순히 기금만 계속 적립하고 있는 일부 적립성기금의 경우에는 수익성 창출방안의 강구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해 둠으로써 재원이 사장(死藏)되고

있음.

○ 따라서 충청북도에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하여, 각 기금별 여유재원을 모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여 동 자금을 지역 SOC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통합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의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익 등으로 함.(안 제4조)

○ 통합기금의 용도는 지역개발 기반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 (안 제5조)

○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함. (안 제7조)

○ 매회계년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10조)

▢ 검토 의견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오장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충청북도에 설치된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통합

된 여유자금을 지역 SOC재원으로 활용하는등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외로 직접 기금을 설치·조성하여 운용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특정정책이나 목적사업의 수행이 용이한 반면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통제가 미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제 운용상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상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각종 기금은 남설(濫設)되고 있는 반면 유사중복기금 통합과 기금일몰제 운영미흡,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분석평가 등 제도적장치 보완필요, 여유자금의 수익성 창출방안 강구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음.

○ 문제점중 여유자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1995년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기금수와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적립성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전액이 장기적으로 사장되는가 하면,

기금별로는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도 사업성기금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불합리한 기금운용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금의 통합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정자치부에서는 통합관리기금표준조례안을 자치단체에 시달하게 되었으며 2000년 처음으로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9개시도에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뿐만아니라 2004년도 감사원의 지방기금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지방기금의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법률제정이 권고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 국회의결을 거쳐 금년 8월 4일 공포하였으며, 동법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2004년말 현재 11개기금 1,402억원을 운용하고 있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1,139억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우리도에 있어서도 통합관리기금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2006년 1월 1일 시행으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이 제정되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참고자료]

충청북도 기금현황

1.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설치연도 관리부서	2004년말 기금규모	2005년운용계획		여유자금
			수입	지출	
11개 기금		140,298	75,429	101,789	113,938
여성발전기금	여성정책관실 1998. 11. 28	3,210	210	124	3,296
지방채상환기금	예산담당관실 2000. 10. 20	500	23	0	523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지원과 1994. . .	93,278	68,407	96,751	64,934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과 2000. 12. 30	1,844	72	211	1,705
사회복지기금	〃 2001. 02. 09	13,356	276	196	13,436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과 1989. 01. 01	5,753	1,748	2,554	4,947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	충북과학대 1998. 01. 09	17	241	249	6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과 1984. 03. 13	9,932	1,290	540	10,682
청소년육성기금	체육청소년과 1979. 10. 30	241	10	8	243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과 2005. 01. 01	9,350	2,682	1,000	11,032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	농업기술원 1981. 11. 04	2,820	470	156	3,134

자료 : 2005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서(예산담당관실)

2. 기금과 일반·특별회계의 비교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설치목적	-모든 지방재정활동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용계획 집 행	-자치단체가 예산안 편성, 의회가 심의·확정 -집행과정에서 엄격한 합법성 통제		-운용계획은 의회의결로 확정 -집행은 자율성·탄력성 보장
수입지출 연 계	-연계 배제	-연계	-연계

3. 기금운용의 원칙

○ **공공성 원칙**

- 기금별 설치목적과 취지에 충실한 계획수립 및 집행
- 특정 수혜자의 중복 집중지원 사전방지 및 대상확대

○ **투명성 원칙**

- 기금계획수립 및 결산절차의 철저한 이행 및 공개
- 기금사업 집행대상 선정기준의 객관화 및 성과분석

○ **효율성 원칙**

- 예산사업과 중복지원 방지 및 실적부진 기금 폐지
- 획일적인 기금조성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기금운용

4. 기타사항

○ 통합관리기금운용조례 제정 시도 : 9개 시·도